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4년 1월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ID=0403))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I

#### 1월부터 61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
-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확대, 이용 가능 대상자 범위도 확대 -
-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1.12~2.2)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평가된다.

\* 대리처방률 약 18% 감소(32.4%→26.5%), 응급실 방문 횟수 0.4회→0.2회(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

연구원)

\*\*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 응답(2023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 평가연구, 건강보험연구원)

-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되었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기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437. 요양보험제도과, 2024. 1. 4.

## II

###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 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원 지역 간담회 통해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혁신계정 신설, 업무강도·소모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 수단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4일 15시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하였다.
- 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우선,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 계정’을 신설한다.
  - 이를 통해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하여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 그간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래, 소아의료대책(’23.2월), 응급의료대책(’23.6월) 등을 통해 고위험 고난이도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계획을 밝혀왔다. 정부는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규 재정 투입을

진행한다.

- 또한, 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하여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관 단위 사후 보상 등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 인프라, 협력 진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의료 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의료인과 의료소비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도 추진한다.

- 그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실손보험이 합리적 의료 이용과 공급을 저해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과 평가는 현재의 인력·자원과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의료기관이 처한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 기관의 노력·의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이는 의료 기반이 이미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욱 역량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프라가 약한 기관에서도 지역완결적 중증 필수의료 제공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질평가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또한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개편한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
- “아울러,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439. 보건 의료정책과. 2024. 1. 4.

### III

####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위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거라 예상된다.

\*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③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④ 양육비용 부담경감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1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2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https://youtu.be/Ud8vGINMfXM>)

■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두 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 반 -> ’24년 2,315개 반, 신규 1,285개 반 ’24.7월부터 운영)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464. 보육사업기획과. 2024. 1. 11.



IV

**2024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역대 최대 폭인 14.7만 개 확대, 6년 만에 단가 7% 인상 -
- 전국 130만 어르신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

- 2024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4.7만 개 증가하여 총 103만 개로 확대된다. 14.7만 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 폭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와 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도 노인일자리 현황 >

	'23년	'24년	증감
총계	88.3만 개	103만 개	<b>14.7만 개</b>
공익활동형	60.8만 개	65.4만 개	<b>4.6만 개</b>
사회서비스형	8.5만 개	15.1만 개	<b>6.6만 개</b>
민간형	19만 개	22.5만 개	<b>3.5만 개</b>

-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은 전년 대비 4.6만 개 증가하여 65.4만 개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은 15.1만 개로 증가폭(6.6만 개)이 가장 두드러졌다. 민간형 일자리는 3.5만 개가 늘어 22.5만 개로 확대된다.

- 또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7%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 (공익활동형) 월 27만 →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월 71.3만 → 월 76.1만 원

-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해 2023년 11월 29일(수)부터 참여자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12일(금)까지 전국 약 130만 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선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 (공익활동형) 97만 명, (사회서비스형) 27만 명, (시장형사업단) 6만 명

■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024년은 65세 이상 어르신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걸맞게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보람찬 일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참고**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유형	내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23년	'24년			
계	-	-	883	1,030	-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로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08	654	30 (3시간, 10일)	월 29만 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 (일부 60세)	80	141	60 (3시간, 20일)	월 76.1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5	10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60세 이상	45	58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 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88	95	알선 수행기관에 15만 원(또는 10만 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55	70	기업에 최대 240만 원(월40만 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2	2	최대 3억 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1490. 노인지원과. 2024. 1. 18.